

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7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5. 1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안산시 도시개발 조례」상,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므로, 지속적인 특별회계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해당 조문을 일부개정

주요내용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(현행)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2028년 12월 31일(안 제10조의 2)

제정(개정,폐지)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4. 4. ~ 2023. 4. 24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
- 방침결정서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 실·과	도시개발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도시개발과장 오 현 갑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개발팀장 고 복 규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석 영 애 (행정 369-1834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제10조의2(존속기한)----- 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.